

함께하는 FTA

01



한·인도 CEPA 7th Anniversary

글로벌 강국 인도로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다

무역왕 비밀코드:1380
제작 기념 선물 이벤트

재미있는 웹 예능 보고,
영화 예매권과 아메리카노 등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인도, 어디까지 가봤니?

인도 주재원이 전하는 인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실전 노하우 » p14

무역왕의 비밀코드를 찾아라!

수출과 FTA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최초의 웹 예능이
탄생했다. 유쾌한 촬영 현장을 찾아 들어보는 비하인드 스토리 » p20

2017,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2017년 세계통상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 무역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 p26

한중FTA 활용, 1 3 8 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 3 8 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1,914억 달러

– 2016년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규모

p4 이슈포커스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12월 20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향후 양국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교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중 FTA 1주년의 성과와 3년차가 된 2017년의 계획에 대해 들어봅니다.

‘MAKE IN INDIA’,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것

p16 커버스토리 한·인도 CEPA 7주년을 기념해 비크람 도래스와미 주한 인도 대사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시작된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과 함께 상호보완적 관계인 두 나라의 원원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p20 Special Report 이상민, 장동민, 김종민 등 예능 베테랑들이 한 자리에 모인 국내 최초 무역 정보 웹 예능 <무역왕 비밀코드:1380>이 탄생했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한국의 GATT 가입은 신의 한수에 가까웠다.
가입 이후 한국은 무려 20여년 가까운 시간동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통해
GATT에 규정된 의무들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무역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었고
이후 무역의 지대한 공헌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실현해 낸 사실은 재연이 필요 없다.”

p26 FTA Study 지난 2015년은 무역국가 한국이 WTO에 가입한 지 20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GATT에 가입한 1967년으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WTO의 전신인 GATT 가입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20

Contents

January 2017 vol.56



COVER STORY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가 올해 7주년을 맞이했다. 거대신층경제권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한·인도 CEPA는 지난 6년간 대인도 수출 확대에 많은 부분 기여했으나 수출 경쟁 심화와 낮은 개방수준 등으로 최근 개선 협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CEPA를 돌아보고, 인도와의 새로운 개선안에 대해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7년 1월 1일(통권 56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Briefing

01 이달의 FTA 브리핑

Issue Focus

04 한·중 FTA 발표 1주년 활용촉진 교류 행사

06 Global FTA News

08 한·중미 FTA '실질 타결'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FTA Cartoon

10 한·인도 CEPA, 새로운 무역의 실크로드가 되다!
안종만

Cover Story

한·인도 CEPA 발효 7주년

12 한·인도 CEPA 7주년 보고서

14 인도 주재원이 전하는 생생한 인도 문화
박형민(주인도 대사관 상무관)

16 비크람 도래스와미 주한 인도 대사 인터뷰

Special Report

18 2017년 세계통상환경과 우리 무역 전망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20 새로운 FTA 수출지원정책 프로그램:
예능 '무역왕 비밀코드:1380'

FTA & Company

24 2016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FTA Study

26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 50주년 기념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28 실전 품목분류: ⑩겨울 스포츠용품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30 중국 인증 뛰어넘기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⑩중국 해관(海关)에 의한 지재권 보호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34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관련 노하우②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36 FTA 사후검증팁: FTA 원산지검증 점검 사항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Art & Culture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⑩구운동

FTA News

42 한·베트남 '제1차 FTA 공동위' 및
'제7차 산업공동위' 개최 외

FTA Square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① 한·중 FTA 1주년 활용촉진 교류 행사

FTA 혜택품목, 대중 수출의 버팀목 맡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12월 20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향후 양국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그간 한·중 FTA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3년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한·중 FTA가 양국 경제 관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양국기업이 한·중 FTA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유공자 포상식은 상호거래관계에 있는 한·중 양측 파트너 기업에 대해 공동수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한국의 (주)키밸브기술, 중국의 Yingkou SVT VALVE(营口埃斯威特阀有限公司)의 경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양 기업 모두 매출이 크게 증대하였다고 밝혔다. 한·중 FTA 활용 확산을 위해 개최된 한·중 FTA 동반성장 포럼 및 FTA 활용 경진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업인이 참석하여 성공스토리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효 3년차가 되는 내년도에는 차이나데스크를 통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중 FTA 이행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FTA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청두, 칭다오에 기 개설된 중국 내 FTA 활용지원센터를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계기로 광저우, 텐진, 다롄에 추가 개설하여 현지 기업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재 분야 등 상품분야 수출의 전략적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 등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분야로 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❷



‘한·중 FTA 활용 확산을 통한 양국 동반성장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 한·중 FTA 활용 우수기업 CEO,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활용 우수기업 및 기관에 정부 표창이 수여되었다.

한·중 FTA 발효 1주년 주요 성과

2016년 11월 말 기준



FTA 혜택/비혜택 품목 대중 수출·수입 현황

구분	FTA 혜택품목	FTA 비혜택품목	합계
수출 금액(억 달러)	262	862	1,124
증감율(전년대비)	▲ 4.0	▲ 12.8	▲ 10.9
수입 금액(억 달러)	302	488	790
증감율(전년대비)	▲ 6.1	▲ 6.7	▲ 4.8

② 2016 KIEP 긴급 포럼

미국 차기정부와 아시아의 통상관계에 대한 전망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2월 9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통상관계에 대한 전망: 도전과 기회(Looking Ahea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U.S.-Asian Trade Relations)'를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하였다.

현정택 KIEP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무역둔화와 반(反)세계화 정서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과 아시아의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자유무역의 장점을 활용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최선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한국은 잠재적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RCEP이나 FTAAP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국제통상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통상 전문가들 참가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전 USTR 부대표)은 본 포럼 개최사에서 미국 통상정책은 트럼프 후보 당선과 함께 근본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차기 행정부가 무역협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무역협정을 계속해서 추구할 경우, 이는 곧바로 미국 기업과 노

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TPP가 현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며, 주후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재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박태호 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패널토론의 좌장으로 참석하였으며,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최식영 서울대학교 조빙교수(전 제네바 주재한국대표부 대사),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클레어 펜리(Clai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대사,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퍼 헤이더(Christopher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기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무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역내 추진 중인 지역무역협정 전망, 한국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주한 외국공관, 업계, 언론계, 학계 및 정부기관 등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통상관계를 전망해본 뜻 깊은 논의의 장이었다.❷

사진제공 KIEP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차기 정부와 관련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는 아시아의 역할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리 박주연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Oman-U.S.A.]

오만·미국 FTA 체결 이후 무역·투자 분야 교류 활발



오만과 미국은 양국 간 경제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1월 FTA를 체결했으며, 이 FTA는 2009년 1월 발효되었다. 오만은 미국이 체결한 다섯 번째 FTA 체결국으로 2003년 부시 행정부는 중동지역자유무역지대(Middle East Free Trade Area)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오만과의 FTA를 추진했으며, 2005년 12월부터 FTA 협의를 시작했다. 미국의 대오만 FDI는 2008년 8억 8,400만 달러에 머물렀으나, FTA 체결 이후인 2011년 9억 9,000만 달러로 약 12% 증가한 바 있다. 이 FTA는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부문 교류 기회 확대 및 무역·투자 증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FTA를 통해 산업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 부분의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됐으며, 미국 회사의 경우 오만 진출 시 오만 측 파트너 없이도 자회사(subsidiary)를 세울 수 있다(단, 이 회사의 모든 주주들이 미국 국적 소유자일 경우에 한함).

오만·미국 투자 진출 현황

오만 투자기업인 Investcorp는 워싱턴 주 시애틀에 위치한 41층 사무실 건물을 2억 2,300만 달러에 구입한 바 있다. 오만·미국 FTA에 의해 미국 국민과 기업은 오만에서 현지 파트너의 지정 없이도 오만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오만 내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미국 기업은 General Electric, Occidental 등이 있다.

오만 내 미국 주요 진출 기업

GE	전력 생산 및 공급, 오일 및 가스 생산, 의료 인프라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Occidental	오만 중남부쪽의 Safah 등 오일 및 가스 개발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오만 내 주요 에너지 개발 회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오만 자국민 채용 정책의 일환인 Omanization을 80% 이상 달성
Glass Point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재생에너지 관련 회사로 FTA 발효 이후인 2011년 오만 진출
Dover	FTA 이후인 2010년 진출했으며, 오만 자국민 채용 정책의 일환인 Omanization을 70% 이상 달성

한편, 2015년 11월 오만은 광산 채굴권 종료에 따른 미국 측 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만 상공부에 따르면, 국제 투자분쟁조정기구(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는 오만·미국 FTA 발효 이후 최초로 제기된 이 소송에서 오만 측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오만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대중동 진출 및 교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오만은 중동지역 내 비교적 안정된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대중동 진출 시 오만을 교두보로 하는 미국의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❶



[Philippine–RCEP]

RCEP 타결 위해 힘쓰는 필리핀



필리핀 정부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에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RCEP 참여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필리핀 언론 ‘마닐라 스탠더드 투데이’를 인용, 최근 라몬 로페스 필리핀 무역산업부 장관이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로페스 장관은 “RCEP은 아세안, 특히 필리핀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국들과의 몇 차례 협상을 통해 우리는 RCEP이 내년에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이 RCEP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온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TPP의 가장 큰 후원자로 평가된다. 2017년 아세안 의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RCEP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 TPP 무용론을 최근 제기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 회의에서 “필리핀이 TPP에 가입한다면 인도와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값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면서 “우리에게 TPP 가입은 정책적 실수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TPP를 폐기할 것이라 고 언급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TPP가 아시아에 많은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❷



[UK–EU]

EU, 영국에 ‘이onus 위자료’ 74조원 합의 요구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영국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시작하면서 최대 600억 유로(약 74조 4,426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EU 측 브렉시트 협상단이 탈퇴 협상 전 영국 정부에 탈퇴 비용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면 ‘패스포팅 권리(passporting right: EU의 한 회원국에서 사업 인가를 얻을 경우 추가 절차 없이 다른 EU 국가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까 우려하는 글로벌 은행들이 초조한 마음에 련던 내 사업을 서둘러 철수하고 유로존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예상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EU 전면 탈퇴 일정인 2019년 3월에 규제 절벽상황이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 협상단과 ‘점정 협상’이라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기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마셀 바르니에 EU 협상단 단장의 최우선 과제는 탈퇴조건 정리이다. 즉 브렉시트 연착륙을 위한 협상을 하기 전, 영국에 있는 EU 국민들의 권리 문제와 최대 600억 유로(약 74조 4,426억원)의 탈퇴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영국은 올해 국민투표에서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3월 말 이전에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정식으로 EU 탈퇴를 통보할 예정이다. 탈퇴 통보가 이뤄지면 2년간 탈퇴 협상을 거치게 돼 있어, 영국의 EU 탈퇴는 2019년 3월쯤 완료될 전망이다.❷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16년 11월 15일 니카라과에서 올랜도 솔로르시노 델가디오 산업개발통상부 장관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중미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확대방안 등 주요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미 FTA '실질 타결'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로, 미주 진출 교두보 확보

지난 11월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성장 가능성 높은 중미 국가 시장 선점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번 FTA는 칠레('0.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5개 국가와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전환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진행, 1년 5개월 만에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장(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했다.

상품 시장 개방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는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플 등)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기준	우리 측	중미 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 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높였다. 통신 분야(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CS)를 도입하여,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으며,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정부조달 시장 개방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¹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사업(지하철, 교량 건설 등)이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중미 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²(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도 확보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비관세 장벽 제거 등 각종 무역 규범 강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 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의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중미 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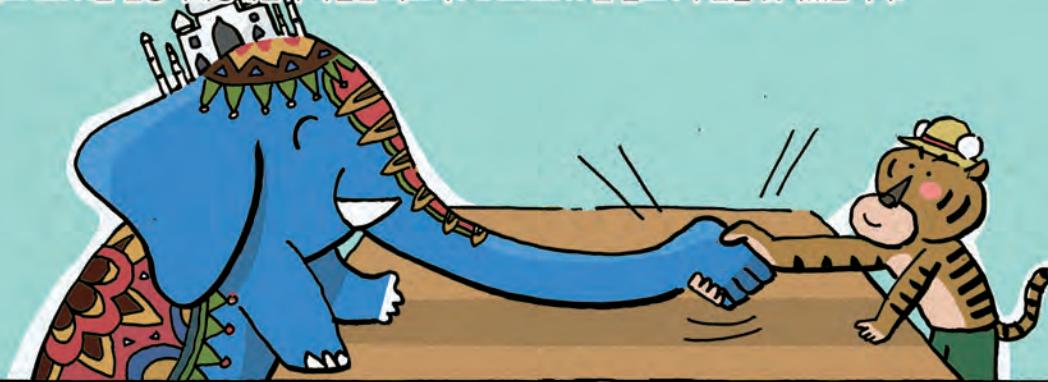
2 프로젝트 수주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 양도 후, 정부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될 것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원활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이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한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반무역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❷

한·인도 CEPA, 새로운 무역의 실크로드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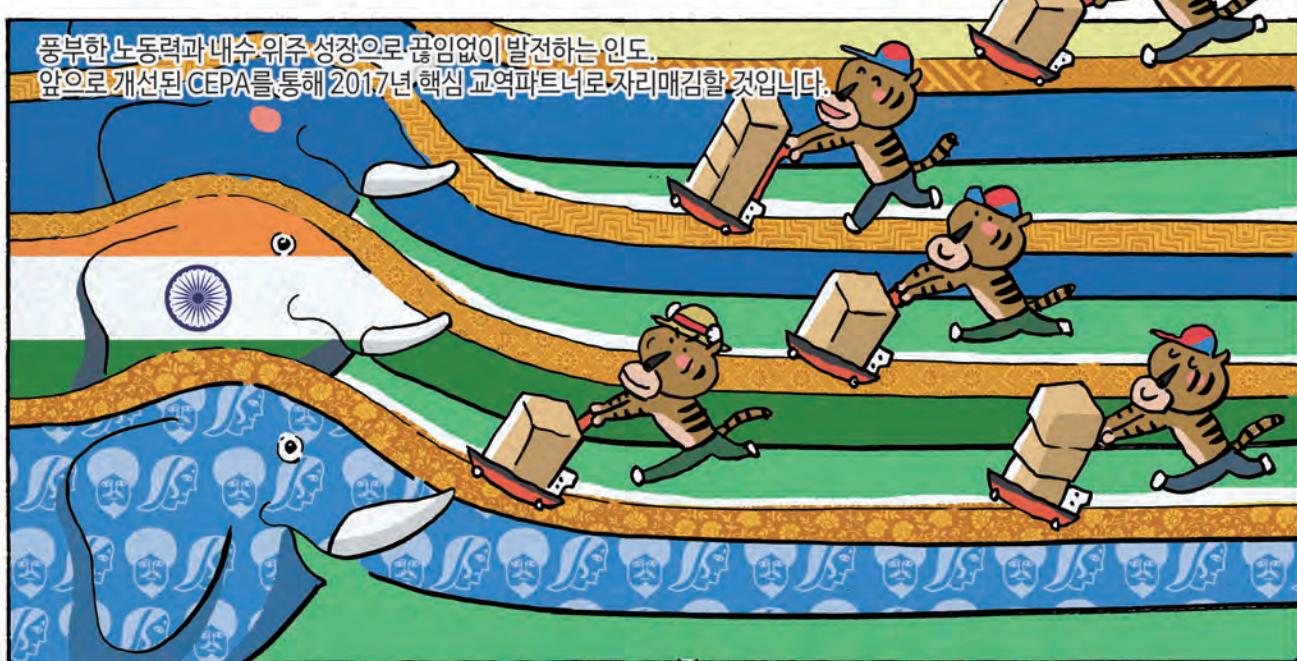
한·인도 CEPA는 신흥거대경제권과 타결한 최초의 FTA로 2017년 발효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2015년 중국 성장률을 추월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내수 위주 성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도.
앞으로 개선된 CEPA를 통해 2017년 핵심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KOREA-INDIA 7th Anniversary

한·인도 CEPA 7주년 보고서
알고 봐야, 더 잘 보이는 나라 인도
비크람 도래스와미 주한 인도 대사 인터뷰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과 인도 상공부 국장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PA 제1차 개선 협상'을 개최하고 양국 간 논의를 가졌다.

The 1st Round of KOREA-INDIA CEPA UPGRADING NEGOTIATIONS

제1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October 27-28, 2016, Seoul



한·인도 CEPA 7주년

한·인도 CEPA 개선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2010년 발효된 거대시장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CEPA가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였다.

한·인도 CEPA는 지난 6년간 대인도 수출 확대에 많은 부분 기여했으나, 수출경쟁심화 및 낮은 개방수준 등으로 최근 개선협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CEPA를 돌아보고, 인도와의 새로운 개선안에 대해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2010년 새해에 맺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신흥거대경제권과 타결하는 최초의 FTA로 당시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체결되었다.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선점 가능성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관계 구축 이후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역할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바 있다. 인도는 인구 세계 2위(2010년 기준 약 12억 명), GDP 세계 7위의 거대시장으로 대한국 수입규제가 많아 CEPA 체결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수출경쟁 심화로 CEPA 활용 점점 어려워져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에 따르면 인도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수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6

History of Korea–India CEPA



- 2016. 10
제1차 개선 협상 개최
- 2016. 6
제2차 장관급 공동위원회
- 2014. 1
양국 정상회의
- 2011. 1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 2010. 1
발효
- 2009. 8
공식서명
- 2008. 9
실질 타결
- 2006. 3 ~ 2008. 9
제1~12차 공식협상
- 2005. 1 ~ 2006. 1
제1~5차 공동연구 회의
- 2004. 5
단기 FTA 추진국 확정
- 2003. 12
한·인도 연구그룹
설치 합의

무역업계 대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 애로 사항 답변

(단위 %)



자료〈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한국무역협회

년간 한·인도 CEPA 수혜품목 수출은 연평균 8.6% 증가하여 전체 대인도 수출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시장의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3.4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와 낮은 CEPA 활용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특혜세율을 선점효과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인도 CEPA 발효와 중국 저가제품 유입 확대로 한·일·중의 인도 시장 내 수출 경합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출경쟁이 심화되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한·인도 CEPA 수혜품목의 단가가 하락하고 대인도 수출액 역시 감소했다. 무엇보다 한·인도 CEPA 활용 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결합기준 품목이 전체의 74%에 달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활용률 수준이 다른 FTA 비해 낮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2016년 5월부터 약 한 달간 2015년 대인도 수출실적 1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인도 CEP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CEPA 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에 대해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도 내 CEPA 협정관세 적용 어려움', 'CEPA 체감효과가 낮음' 순으로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기업의 22.5%가 인도세관으로부터 CEPA 협정관세 적용 거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절 사유로는 품목분류 판정 상이 (52.0%), 사후 협정관세 적용(44.0%)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주력 수출품 및 유망품목 양허 개선 추진

무역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도 CEPA 재협상 시 최우선 과제로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양허품목 확대', '기존 협정관세 추가인하', 'CEPA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지난 6월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CEPA 제2차 장관급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지난 10월에는 서울에서 제1차 개선 협상이 개최되었다. 6월 인도에서는 장관급 공동위를 비롯해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및 무역상담회가 열렸고, 인도 진출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코리아 플러스'가 인도 상공부 내에 설치되었다. 코리아플러스는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과 인도 정부를 직접 연결하는 창구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 열린 1차 개선 협상에서는 장관급 공동위 계기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양허 및 원산지기준 개선,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측은 공청회 등을 계기로 수렴한 업계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대인도 주력 수출품 및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양허개선 및 원산지 기준 완화를 적극 협의하였다. ☺

글 박형민(주인도 대사관 상무관)

사진 한국경제신문

인도 주재원이 전하는 생생한 인도 문화

알고 봐야, 더 잘 보이는 나라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인도에 대한 선입견은 다양하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인도의 속사정을 알 수 없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 주재원이 들려주는 생생한 인도 체험기를 통해 숨겨져 있던 인도의 ‘진면목’을 확인해보자.

필자는 지난 2014년 2월 델리에 위치한 주인도 대사관의 주재관으로 부임했다. 그 이전까지 인도에 직접 와본 적은 없었다. 필자 역시 그저 책이나 인터넷 자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인도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다. 인도 대사관에 부임해 델리에서 생활해보니 인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면에서 맞기도 했지만, 다른 많은 부분은 잘못 전해졌거나 우리만의 입장에서 편향된 시각을 가졌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인구가 많은 나라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진 여러 인종과 그에 따른 여러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와 비교해 훨씬 더 부유한 계층도 많다. 카스트라는 사회계급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단순한 몇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수천 개의 계층이 있으며 이러한 계층이 여전히 인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주 큰 우물에 사는 개구리

사람들은 인도의 광활한 영토, 다양한 인구 구성, 느린 경제 발전 속도 등을 빗대어 ‘코끼리’로 비유하곤 한다. 우리 속담에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우물 밖의 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좁은 우물에 갇혀 편향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속담이다. 인도에서 20여년 비즈니스를 해온 한 지인이 인도 사람들은 ‘아주 큰 우물에 사는 개구리’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인도 사람들은 정책, 기준 등을 설정할 때 인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 평가보다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한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과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관점, 편

리를 기준으로 가치판단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인도인들의 사고 및 생활 방식은 인도라는 큰 영토, 자원을 가진 아주 큰 우물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익힌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인을 보면 인도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인도의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관계는 ‘주(主)/종(從)’, ‘갑(甲)/을(乙)’, ‘본인(本人)/대리인(代理人)’이라고 생각한다. 인도 사회는 카스트라는 사회 계층을 기본으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인과 종, 갑과 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형성, 지속된다. 인도의 상위계층은 주인/갑/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거의 모든 일상에서 종/을/대리인을 통해서 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갑질’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상위 사회계층, 부유한 재산가, 고용주 등이 하위 계층, 피고용주 등에 대하여 ‘갑질’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편이다. 이러한 사회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종/을/대리인은 주인/본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종/대리인)의 이익을 우선하기에 동기,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업무 비효율성 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면 통상 판매자가 갑이고 소비자는 을로 인식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인도에서는 이러한 인식도 가끔은 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판매자가 오히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소비자가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할 때는 제대로 하는 사람들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인도의 연방(Union)정부, 주(State) 정부의 공무원을 많이 만났다. 3년여 인도 생활 가운데 만난



인도인들의 사고 및 생활 방식은 인도라는 큰 영토, 자원을 가진 아주 큰 우물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익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인을 보면 인도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도 공무원들은 자질이 매우 우수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도 정부 공무원과의 사이에 있던 에피소드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각국 정부와 외교활동으로 협정,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다. 인도 정부가 협정,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인 경우, 이들 협정 등에 대하여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 과정이 매우 어려워서 많게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에서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사안 또는 의제가 포함된 양해각서의 경우 우리 정부에서 양해각서체결을 요청한 지 2~3주일 만에 협의 과정, 내부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보았다. 또 하나는 금년 6월, 인도 뉴델리에 대한국 투자전담조직(코리아 플러스 팀) 사무실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일이다. 인도 측에서 사무실 설치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무실 개소식 이를 전에 점검 차 사무실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천장, 전기배선 공사 등이 한창이었고, 이 상태로는 이를 만에 공사가 마무리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를 후 개소식에 갔을 때는 사무실 공사가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사무실이 정리되어 있어서 매우 놀라웠고, 다행히 무사히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었다.

고액 화폐 통용금지로 모바일 결제 수단 인기

인도 정부는 지하경제(Black Money)를 타파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전격적으로 일상 경제거래에서 통용되는 500루피(약 8,500원)과 1,000루피(약 17,000원)의 고액 화폐에 대하여 통용금지(Demonetarization) 처분을 발표했다. 인도는

상거래의 대부분인 98%(거래량 기준)가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현금 거래의 대부분은 500루피와 1,000루피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인도 국민들과 인도 거주 외국인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인도 델리의 경우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11~3월은 인도인들의 결혼 시즌이다.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인도 결혼식 문화이다. 화폐 통용 금지라는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에 직면한 인도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현금 없는(cashless)' 거래방식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현금 없는 거래 방식 가운데,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은 모바일 결제수단이며, Paytm이라는 모바일 결제 수단이 인기를 얻으며 유행하고 있다. 또한, 결혼식 선물은 현금 대신 기프트 카드가 센스 있는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인도 언론에 의하면, 연말 시즌 동안에 1천만 개의 기프트 카드가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4배 폭증한 수치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인도 특히 델리는 3월~9월까지 30~45도 이상의 혹서기이고, 식수 등 생활용수 등이 양호하지 못해 대사관에서는 인도 여행 또는 출장 시 물 조심과 배탈 예방 방법 전달에 가장 신경 쓴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도와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를 매우 다르다는 것과 인도인들의 기본적인 사회관계 인식, 문화 등을 염두에 두고 여행 또는 출장, 비즈니스를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❷

* 필자는 200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2월부터 외교통상부 주인도대사관(뉴델리)에서 산업·경제·통상·무역·투자·에너지·자원 등 분야의 한·인도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비크람 도라스와미(Vikram Doraiswami) 주한 인도 대사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 내 진출 한국 기업에 최고의 기회 될 것”

지난 2010년 1월 1일 발효한 한·인도 CEPA가 올해 7주년을 맞이했다. 우리에게는 첫 신흥거대경제권과의 양자협상이자 인도에게는 첫 OCED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던 CEPA.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도라스와미 대사는 한층 더 개선된 제도와 양국의 상보적 기술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하는 한국과 인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한국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15년 10월 한국에 왔습니다. 저와 가족들 모두 한국 생활을 좋아하며 개인적으로도 한국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인도와 비교해 한국 기업만의 특징이 있나요?

두 나라 기업 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나라 모두 대기업을 포함해 가족 경영 체제 기업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며, 이 기업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입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기업은 유연한 계층 구조 내에서 운영되며(서양 기업에 비해서는 계층적이지만, 아시아 기업보다는 유연한 편), 그에 맞는 수평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주어진 계획을 결점 없이 진행하는 데 탁월 하며, 실행의 정확도에 있어서도 놀라울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인도 기업은 한국 기업에 비해 정밀함에 있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도 기업들, 특히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혁신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높은 교육열 등 인도와 한국 간에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나라 모두 자식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낮은 소득 계층의 사람들 역시 자식들에게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 모두 가족의 중요성과 노력을 통해 성공하는 것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게 있어 한·인도 CEPA는 거대신흥경제권과의 첫 FTA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도에게 한국과의 교역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도 역시 지난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이었습니다. 또한 투자와 새로운 합작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져 두 나라간의 경제 파트너십이 좀 더 폭넓고, 발전되길 기대했습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지 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CEPA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교역량이 늘어났고(발효 초반 2배 가까운 성장), 양국 간에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CEPA를 통해 양국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양국에 가장 도움이 된 분야는 무엇일까요?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인도 기업들은 부유한 한국 시장 진출이, 특히 프리미엄 상품 분야에서 있어 좀 더 용이해지길 바랍니다. 또 한국 시장의 서비스 분야 진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도 기업은 인도의 IT와 IT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인력이동(MODE 4)을 비롯한 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교역 상황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품 분야에 있어 인도의 타 FTA 협정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양허개선을 기대하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분야에서도 상호 이익을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 국의 시장에서 현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개선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제조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시작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캠페인은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대, 삼성, LG는 '인도' 브랜드로 알려져 누구나 잘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을 통해 인도 시장에서 이들과 같은 높은 지명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인도 CEPA가 양국 사이의 무역뿐 아니라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럼요. 양국 간 투자와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한국과 인도 기업은 문화, 미디어, 여행 등을 통해 민간 분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사관에서는 매년 "Sarang"(한국어로는 '사랑'이라는 의미이며, 힌디로는 '다채로운'이라는 뜻)이라는 이름의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양국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인도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편도 증가하여 2015

년 주 6회였던 델리행 비행편이 현재 주15회로 늘어났고, 봄 베이행 비행도 주 3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남인도와 한국을 잇는 비행편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 또는 다자국 행사에서 매년 만나기로 협의했으며, 국방부와 외교부 간의 '2+2' 회의를 신설하고, 국방관계를 향상시키며, 국가안보보장회의 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성장, 보호무역기조 확산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응하는 인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된 경제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역과 투자가 실제로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지요. 현재 이익의 균형은 항상 균일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그것이 공평하다고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단계는 상보적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이 더욱 확장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선 분야는 현재 세계 경제문화와 저비용 선박(벌크화물선) 및 고비용선박(하이테크선박)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한 생산 라인은 트레이너나 감독관의 자격을 갖춘 숙련된 인력과 함께 인도 조선 사업 확장을 위해 인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조선 사업과는 경쟁구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국에는 고용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다른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도와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기술은 상호보완적이며, 큰 제한 없이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를 들자면, 국방 산업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군수물자 구매국 중 하나이며, 한국의 관련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인도의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코딩 서비스 그리고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하드웨어 가공 기술입니다. 두 기술력이 합쳐짐으로써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도 CEPA와 관련하여 한국인과 기업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한국과 인도 기업의 지원 하에, 양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최고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하면 성공합니다! ☺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2017년 세계통상환경과 우리 무역 전망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새해

최근 수출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전반적으로 우리 무역에 대해 호평하기 어렵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우리 수출의 부진이 계속되어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던 영광은 지난 2년간 온 데 간 데 없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도 심화되어 세계 수출순위도 하락했다. 그 사이 EU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까지 고조되었다. 2017년 우리 무역은 이러한 신(新)세계통상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2016년 우리 무역의 명(明)과 암(暗)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실패했다. 우리의 주력상품인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물론, 선박과 기계제품류까지 부진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 사이 전체 수출이 7%나 감소하며 근 6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했다.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은 2004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고,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기업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무했다. 물론 어두운 단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에 치우쳐있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소폭 하락했으며 반대로 대미국 수출비중은 확대되어 G2 간 나름의 균형을 찾았다.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역량이 확대되고 동시에 한국의 브랜드가 소비재 수출에 확대에 기여한 점도 이상적이다. 특히 오랜 시간 지나치게 특정 주력 품목에 의존했던 우리 수출이 고부가가치화에 진전을 보이며, 화장품, 광전자, OLED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FTA를 통해 베트남, 콜롬비아 및 중앙아메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간 점도 고무적이다.

2017년 글로벌 통상환경

2017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뚜렷한 성장세를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IMF와 OECD 등 주요 경제기구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1.8% 내외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도나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경기회복은 눈여겨볼만한데 동 기구에서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을 각각 6.2%, 7.5% 정도로 예측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결정되고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 이탈리아의 EU 탈퇴인 이탈렉시트(*Italexit*)까지 거론되며 대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고 이어 트럼프 정권이 내년 초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한동안 거세게 불 전망이다. 특히 메가-FTA 선두주자격의 TPP는 트럼프 독트린 하에서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상대급수적으로 지지부진했던 RCEP과 한중일 FTA, 나아가 FTAAP가 재조명받으며 새해엔 중국 주도의 무역 청사진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중국 역시 각종 산업별 구조조정과 더불어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드론 등 첨단 소비재 육성에 적극적이어서 우리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2017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이렇듯 불확실성이 곳곳에 산재해있는 형국이어서 우리로써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2017년 우리 무역 전망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그래도 2016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수출전망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특히 2016년 7월 발효한 한·콜롬비아 FTA와 최근 신규 타결된 한·중미 FTA, 그리고 진행 중인 한·에콰도르, 한·이스라엘 FTA가 진전되면 경제성장세가 비교적 완연한 신흥국 중심으로 우리의 수출루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대중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그래도 2016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수출전망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으로 높은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WTO 탈퇴와 기존 FTA 재협상, 폐기 등을 거론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TPP, NAFTA 등 기존의 무역협정들에 대한 재고(再考)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한·미 FTA 역시 폐기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진 않겠지만 좌불안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 무역공약에서 자신이 직접 지목한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높일 전망인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과 함께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가 더욱 엄격해질 경우 동종 품목군을 주로 생산, 수출하는 우리의 입장도 여간 걸끄러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은 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뿐만 아니라 한·미, 한·중 FTA로 그나마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있던 국내 우리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한·미, 한·중 FTA라는 양자채널을 보유하고 있

는 바, 극단적인 통상마찰이나 재협상 테이블에 이르기 전 충분한 사전 소통의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신흥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우리 FTA들을 개선, 개정하려는 지금의 노력은 지속하되 신 수출동력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경쟁국과 및 신구(新舊) 수출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찰을 지속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유지와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가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절필하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갈 길은 먼 모양새다. 그렇지만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불문율이 2017년 세계통상환경과 우리 무역에 예외일 리 없다.❷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산업방송채널i

웹 예능 '무역왕 비밀코드:1380' 촬영을 위해 이상민, 장동민, 김종민 등 베�테랑 예능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새로운 FTA 수출지원정책 프로그램

웹 예능 '무역왕 비밀코드:1380'

이른 아침,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타워 51층 중회의실이 시끌벅적하다. 종편 방송의 예능프로그램 촬영 현장을 방불케 하는 많은 카메라와 이상민, 장동민, 김종민, 박휘순 등 내로라 하는 예능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기에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예정화와 포미닛 멤버 전지윤까지 합세했다. 과연 이들은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산업자원통상부는 글로벌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환경의 어려움에 따라 정책 홍보를 통해 수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 관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평가 아래 새로운 홍보 방안을 기획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수출과 FTA 지원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웹 예능'이라는 특별한 장르를 기획 했다. 지난 12월 19일 트레이드 센터를 비롯해 우리나라 무역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진행된 웹 예능 '무역왕 비밀코드: 1380'이 바로 그 첫 번째 도전이다.

예능 베테랑이 진행하는 최초의 무역 예능 프로그램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의 MC 겸 출연진을 맡은 예능 베테랑 이상민과 장동

민은 국내 최초 무역 관련 예능에 출연한 각오에 대해 설명 했다. 세금부터 관세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무역에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얻어 진정한 '무역왕' 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6명의 출연자가 크게 두 팀으로 나뉘어 각종 퀴즈 및 게임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나가는 구조이다. 첫 순서는 이상민과 장동민이 각 팀의 주장이 되어 팀원을 정하는 시간이었다. 이미 방송에서 다양한 사업 실패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사업 상담가'로 통하는 이상민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어필했고, 장동민은 수많은 예능 미션에서 이뤄낸 승부율을 내세우며 팀원들을 설득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상민, 김종민, 예정화로 구성된 '예민한 사업가' 팀과 장동민, 박휘순, 전지윤이 함께하는 '무역장전' 팀이 탄생했다.

이상민 주장의 예민한 사업가 팀과 장동민 주장의 무역장전 팀은 무역왕이 되기 위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다.



예민한 사업가 vs. 무역장전

첫 번째 무역 관련 상식 퀴즈로 본격적인 미션 대결이 시작되었다. 퀴즈가 나오면 각 팀 별로 대표 한 명이 나와 코끼리코를 한 채 제자리에서 10바퀴를 돈 후, 달려나가 의자에 먼저 앉는 사람이 정답을 먼저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 첫 번째 문제는 난이도 하 수준으로 ‘무역을 영어로 말하시오’였다. 양 팀의 여성 멤버 두 명이 출전했고, 간발의 차로 빨랐던 예정화가 당당히 ‘트레이드(Trade)’ 정답을 외쳐 예민한 사업가가 점수를 가져갔다. 이어지는 나머지 문제 역시 다양한 무역 및 FTA에 관련한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난이도 중상에 해당했던 ‘FTA는 어떤 단어의 약자일까요?’의 질문을 단번에 맞춘 장동민에게 모든 출연진들이 친사의 눈빛을 보내 웃음을 자아냈다. 두 팀의 승부욕과 엎치락뒤치락 흥미로운 점수 전쟁으로 결국 추가 퀴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다. 첫 번째 상식 퀴즈의 우승팀을 위한 선물은 바로 비밀코드 ‘1380’이었다. 1380으로 전화를

걸자 중소기업 무역활성화를 돋는 ‘FTA종합지원센터’로 바로 연결되었다. 이어지는 모든 미션의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이 번호 안에 있는 셈이다. 비밀코드 1380을 가진 자가 무역왕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촬영은 밤늦게까지 트레이드 센터를 비롯해 코엑스 몰 전역에서 진행되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단체 줄넘기를 통해 물건의 이름과 HS코드 맞추기 게임, 관세사와 함께하는 관세율 게임, 트레이드 센터 3층에 위치한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콜센터 직원과 함께하는 토크 및 게임, 바이어 미팅을 통한 에티켓 게임, 인증맨을 통한 게임 및 시민들에게 전하는 무역 홍보 미션까지 다채로운 미션과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최고의 예능인이 함께한 ‘무역왕 비밀코드:1380’은 오는 1월 10일부터 총 8회에 걸쳐 네이버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무역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재밌고, 쉬운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❷

단체 줄넘기, 시민 대상 무역 홍보, 바이어 미팅 등 무역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밌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최초의 정부 부처 홍보용 예능 웹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무역왕 비밀코드:1380〉을 만든 사람들

“재밌는 예능도 보고, 무역 상식도 배워가세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 모든 정부정책 홍보 관계자들의 고민이었을 이 질문에 신선한 대답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다. 국내 최초 무역 예능프로그램을 기획한 ‘무역왕 비밀코드:1380’의 제작진을 만나 기획부터 촬영까지의 뒷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웹 예능 〈무역왕 비밀코드:1380〉을 제작하게 된 배경과 기획 의도를 설명해주세요.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대내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재조명하고 수출지원정책의 인지를 통해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장르를 웹 예능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책의 복잡성과 어려움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을 친근한 홍보로 받아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홍보는 한정된 예

산 속에서 TV, 신문 등 전통적인 홍보 수단을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을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그 활용의 폭에 비해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서 정부 정책이라는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 흥미를 끌만한 재밌는 아이템 발굴을 고민하던 차에 웹 드라마라는 장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 이미지 광고로 새로운 콘셉트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부처 입장에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의 웹 드라마와의 경쟁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활성화되어있지 않지만 웹방송계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되는 웹 예능을 선택하

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장동민, 박휘순, 김종민, 예정화, 전지윤 이들을 캐스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연예인 섭외의 첫 번째 조건으로 구성원들 간의 케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무역)에 관심이 많은 연예인을 선별하기로 했죠.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잡아 줄 이상민 씨와 TVN '지니어스 게임'에서 이상민 씨와 대결했던 장동민 씨, 최근 KBS 연예대상을 탄 김종민 씨, 군데 군데에서 웃음코드를 만들어 줄 박휘순 씨, 마지막으로 신선함으로 승부하는 예정화씨와 전지윤 씨를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테마로 회차를 구성했나요?

제작 과정에서 재미 요소와 정부 정책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 역시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재미없어서 보지 않는 홍보는 홍보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재미를 우선 시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 퀴즈를 통해 정책 정보를 습득하고, 퀴즈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에피소드로 예능을 풀어나갔습니다. 단순히 퀴즈만 넣지 않고 다양한 미션수행 게임을 통해 각 게임이 상징하는 수출정책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으며, 게임이 완료한 후에 진행되는 힌트를 통해 정책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총 8회로 10~15분 정도의 분량이며 무역협회, 코엑스 등 우리나라 무역의 랜드마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목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숨겨둔 반전이나 기대할 만한 재미 요소가 있나요?

전체 테마는 팀 전으로 팀을 나눠 각각 미션을 먼저 수행하는 팀이 이기는 형식입니다. 개성 있는 출연진인데다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과정이 있었기에 각 회별로 다양한 에드리브가 나왔습니다.

이번 웹 예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최종적으로 가장 알리고 싶었던 정책은 바로 '1380'입니다. 수출지원정책을 일일이 알리는 과정의 복잡성을 그대로 노출하기보다 수출이나 FTA를 떠올리면 곧바로 수출 지원콜센터1380으로 전화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콘셉트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기업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380을 알리는 것이 이번 홍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촬영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몇 가지

소개해주세요.

장동민 씨가 국장님께 음료수라도 사달라고 조르셨어요. 국장님께서 부끄러워하시며 피자를 쓰시고 도망가듯 가버리신 기억이 나네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종일 진행한 일정이라 다들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을 만큼 무척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제작 후, 스태프와 출연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반 국민들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정부 정책홍보라 처음엔 사실 크게 흥미롭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1380이 자금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나요?

무엇보다 무역을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흥미로워 예능을 보게 된 시청자들이 주변의 많은 기업가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방송 후, 추가 시즌도 계획하고 있나요?

아직은 없지만 홍보 여건이 마련되면 정부 정책의 친근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홍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❷

**무역왕 비밀코드:1380
제작 기념 선물 이벤트**

**무역왕 비밀코드:1380만 보면
다 맞출 수 있다!**

1월 10일 네이버캐스트에서 방영되는 '무역왕 비밀코드:1380'을 시청하시고 아래의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독자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10명: CGV 영화예매권, 3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 예민한 사업가 팀의 흥일점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 ① 이상민
- ② 장동민
- ③ 예정화
- ④ 김종민

정답을 적어 1월 30일까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printjssu@hankyung.com

글 김선녀 기자
사진 관세청

1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번 2016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및 학생 수상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4회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소기업 FTA 활용 우수사례가 한 자리에

관세청은 지난 12월 2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제4회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의 FTA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FTA 활용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8건의 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와 55건의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사전 서면심사와 행사 당일 본선 진출작 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현장발표 결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연전자와 LCD 패널 코팅필름 제조업체인 [\(주\)이오나노켐](#)이 금년도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서연전자는 협력사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연전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FTA 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¹ 사용을 지원하였다. 한편 [\(주\)이오나노켐](#)은 상시근로자가 14명인 소규모 기업임에도 FTA를 활용하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FTA 활용 경험이 전무하던 [\(주\)이오나노켐](#)은 CEO의 관심과 공익관세사² 제도를 바탕으로 FTA 활용을 시작하였고, 2015년 전무하던 수출실적을 2016년 545천 달러로 견인해냈다. 이밖에도 FTA를 통해 지역 특산물(고흥 유자)을 수출한 사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한 사례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학생부문에서는 충남대학교의 강경준 외 1명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김도하 외 2명이 중국의 의료시장과 할랄시장을 타깃으로 한 FTA 활용 아이디어로 대상을 수상했다.

¹ 원산지관리시스템 기업이 입력한 수출물품의 원재료 가격, 부품 구성 등을 바탕으로 FTA 원산지 판정, 각종 증빙서류 발급 기능 등을 텁새한 시스템

² 공익관세사 관세사회와 관세청의 협업으로, 관역별 관세사들이 세관에 상주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영예의 수상작 ▶

사례1

기업부분 대상 서연전자

사례2

학생부분 수상자 충남대학교 전성현 외

FTA 활용개기 및 필요성

FTA 확대로 인한 직·간접 수출의 증대로 평균 신장률은 5%대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이에 따라 FTA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했다. 주요제품 HS코드 협정관세는 EU, 미국, 인도의 경우 2.7~7.5% 관세 절감이 가능하며, 중국은 현재 1%~7%의 관세의 절감이 가능(점차적 철폐)하다. 해외계열사의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구 및 원청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사내 원산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부품공급사(협력사)와의 원산지증빙서류 교환이 필요하나 2~3차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어려움이 존재했다.

FTA 활용내용 및 성과

서연전자 내부에 전담조직 TFT 설립 및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 FTA 유관기관인 경기FTA활용지원센터, 국제원산지정보원과의 MOU(업무협력계약) 체결 및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협력사를 지원했으며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한 HS 코드 관리와 자사 FTA 시스템(K-Origin)의 구축 등으로 빈틈없는 FTA 관리체계를 지향했다. 협력사 지원제도를 통해 매년 2회 이상의 정기교육, 담당자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 주요 협력사 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협력사 등급평가를 실시하며,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로 해외세관의 검증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었다.

향후 FTA 활용계획 및 시사점

FTA 적용 확대를 위한 거래선 변경과 협력사의 생산지 이원화를 통해 수출을 장려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며 자회사(STF) 합병으로 제품 부가가치기준의 역내산 전환 확대를 통해 해당 FTA 협정 국가로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FTA 활용의 활발한 인식 공유로 자사의 FTA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FTA 활용 노력과 함께 매출 증대의 효과가 발생했다. 협력사 및 계열사 FTA지원 확대로 원산지검증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동시에 협력사의 수출 증대에도 기여했다.

기회의 열쇠 FTA로 국위를 선양하는 충대임플란트

인간의 3대 옥구 중,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인구 고령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식욕 활동의 질적 개선은, 무차악 발병률이 높은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식욕을 총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치아 건강, 특히 임플란트 예상 시장을 발굴하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달성한 한국 임플란트 의료 기기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사람과 시술을 하는 전문의들의 현실적인 불편사항과 서비스 노하우를 통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수준 또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임플란트 사업 분야에서 급격한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의 경쟁력 대두되었다.

2014년 12월 한·중 FTA의 체결로 의료기기에 대한 낮은 관세율과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한중 합작투자를 통한 중국 현지 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충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성현과 강경준은 낮은 관세율은 물론 FTA로 개방된 중국 의료시장에 차별화된 한국 의료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적극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충남대학교 치과대학의 동문들과 대전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의사들과 중국 (주)충칭파워의 한중 합작투자를 통한 의료 서비스 교환 MOU체결 후 충칭에 '충대임플란트'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성공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증가와 FTA 체결 관세인하 효과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2020년까지 높은 기대매출 전망 및 국내 임플란트 제조업의 꾸준한 성장 수출량 기대해 본다.❷

* 이번 비즈니스 모델은 한·중 FTA를 통해 관세 혜택으로 이익을 취하고 중국 치의료 산업의 국내 기업 진출 성공 사례입니다.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¹ 가입 50주년 기념

한국의 GATT(WTO의 전신) 가입 비하인드 스토리

지난 2015년은 무역국가 한국이 WTO(1995년 출범)에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던 해였다.

WTO의 전신은 바로 GATT(1948년 출범)이고, 한국은 WTO에 앞서 GATT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통상체제에 편승했던 바 있다. 올해는 한국이 GATT에 가입한 1967년으로부터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해다.

1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
1955년 8월 26일
한국은 58번째
회원국으로 IMF와
IBRD에 가입

GATT의 출범

보호무역의 비극과 참상을 몸소 체험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종전을 1년 앞둔 1944년 미국 뉴욕 클랜드 북부에 있는 뉴햄프셔 주 브雷顿우즈에 모여 국제통화질서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전후 재건 및 부흥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현 세계은행 World Bank의 전신)을 설립하는 데에 성공했고² 이어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 설립까지 추진하였으나 미국 상원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후 협정문의 형태로 살아남은 GATT(설립 당시 23개 회원국)는 이후 1995년 WTO가 정식 출범하기까지 약 반세기 동안 신규회원국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며 확대, 국제무역을 관장하게 된다.

한국의 GATT 가입史 I: 1차 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GATT가 1948년에 출범(3월 하반기 현장 완결)했고 같은 해 8월 15일 한국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GATT와 한국은 동갑내기인 셈이다. 한국은 광복 후 몇 해 지나지 않아 1950년 9월부터 일찌감치 GATT 가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GATT 정신에 걸맞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명실공히 무역과 FTA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은 한국이지만 당시에는 광복 이후 북한과의 정치사상적 정체성의 대립 구도 속에 GATT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독립국가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어쨌든 당시 영국의 토키(Torquay)에서 개최된 GATT 2차 무역회의에 사절단을 보내 화학비료, 면화, 살충제, 위스키, 삼페인, 역청탄 등 총 31개 품목에 대한 관세의 양허안을 제시한 한국은 이어 성공적으로 가입의정서에 서명하고 당시 회원국 34개국 중 25개국의 승인을 받아 최종 가입에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해 6월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내 비준 등 이후 절차를 밟지 못해 GATT 가입이 최종 무산되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GATT 가입史 II: 2차 시도와 최종 가입

GATT 가입에서 한번 고배를 든 한국이 다시금 도전장을 내민 것은 1960년대 중후반이었다. 당시 빈곤한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던 한국은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시작한 경제개발전략의 일환으로 GATT 가입을 시도했는데 특히 1965년 11월 16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내용에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가입의지를 느낄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GATT 가입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국제무역에서의 계약 위반이나 덤핑행위를 국제적 신용과 국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GATT 가입에 초석이 될 공정무역정신을 사전에 미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력을 제공한 당시 정부의 역할 덕분인지 한국은 1966년 5월 20일 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개월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5개월간 관세협상 등을 진행하게 된다.

GATT 가입에 앞서 이미 1964년 면직물무역장기협정(Long Term Arrangement for Cotton Textiles, LTA, 이후 섬유류에 관한 협정(Multi-fibre Agreement, MFA)에 가입했던 한국이

한국의 GATT 가입은 1967년 2월 공식절차를 완료 짓고 이어 국내절차로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조약 제243호)〉를 국회동의, 서명, 발효, 관보게재 순으로 마무리 지음으로 끝이 났다.



지만 자유무역 체제 하 예외였던 섬유협정에 가입하는 것과 자유무역체제 그 자체인 GATT체제에 가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특히 의욕 넘치게 국내에 GATT 가입추진위원회까지 설치했던 한국이지만 애초 가입 전략이 기타 GATT 가입국의 관세를 낮추는 것보다는 자국 관세를 최대한 유지하는 수비적, 방어적 자세에 기반을 두었기에 가입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역시나 한국의 수비적 가입협상은 기존 체약국³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의 경제수준이 매우 낮았고 무역규모 및 역할도 크지 않았기에 결국 한국의 가입은 승인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수비적 전략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전체 60개 양허품목 중 41개 품목(약 68%, 당해 65년 기준 전체 4억 6,300만 달러 총수입의 1.2%인 100만 달러 이하 수준)에 대해서는 관세를 원상태로 유지했으며 나머지 19개 품목 중 17개는 관세 인하, 2개는 관세 상한선을 책정했다.

한국의 GATT 가입은 1967년 2월 공식절차를 완료 짓고 이어 국내절차로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³ WTO와 달리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회원국이라는 용어 대신 체약국이라는 용어를 사용

⁴ 일본은 앞서 2월 초 이미 한국의 GATT 가입 지지의사를 밝혔던 바 있음. 3월 8일 최종 48개 득표로 가입 결정

⁵ GATT 제18조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Article XVIII Governmental Assistance to Economic Development) B절

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조약 제243호)를 국회동의(67년 3월 10일), 서명(3월 15일), 발효(67년 4월 14일), 관보게재(67년 4월 14일) 순으로 마무리 지음으로 끝이 났다. 한국이 가입한 것은 케네디 라운드(1964~1967) 말기였는데 한국은 위 국내절차와 서명에 앞서 기준 70개 회원국 중 2/3 수준인 47개 찬성투표가 필요했고 67년 3월 7일(투표 마감일은 3월 10일) 스웨덴의 47번째 찬성투표로 가입조건을 만족, GATT의 71번째 체약국이 되었다.⁴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인지 우리 외무부가 제네바 대표부로부터 서면을 통해 투표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여담은 새삼 흥미롭다.

GATT 가입 이후의 한국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한국의 GATT 가입은 신의 한수에 가까웠다. 가입 이후 한국은 무려 20여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통해 GATT에 규정된 의무들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으면서도⁵ 자유무역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었고 이후 무역의 지대한 공헌을 통해 꽂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실현해 낸 사실은 재언(再言)이 필요 없다.❷

글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사진 한국경제신문

겨울 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스키와 스노보드가 떠오를 만큼 대중들이 즐겨 찾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매년 겨울이 되면 스키장이 있는 리조트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실전 품목분류: ⑥겨울 스포츠용품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는 HS 9506호의 운동용구에 분류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면서 겨울이 어느덧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드디어 짜릿한 겨울 스포츠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1년을 꼬박 기다려 온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전국의 곳곳으로 떠나곤 한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겨울 스포츠의 종류와 그 용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알아보자.

부츠는 신발류, 스키복은 의류로 분류

스키와 스노보드는 가장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중 하나로, 눈부신 눈길을 가르며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는 겨울 스포츠이다. 스키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스키장에 가면 접할 수 있는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최근 짧은 연령층이 많이 찾는 짧은 길이의 프리스타일스키가 있다. 알파인 스키는 긴 플레이트 위에 스키부츠를 바인딩 장치로 고정시킨 후 활강하는 스키이다. 보통 대여점에서 스키를 대여할 때 볼 수 있는 장비로, 몸무게와 키에 비례하여 플레이트의 무게와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스키를 탈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고 한다. 노르딕스키에는 크로스컨트리처럼 여러 가지 기술(스케이팅 주법, 대각선 스텝)을 사용하여 경사가 완만한 지형의 눈 덮인 지면 위에서 스키를 탈 때 사용하는 스키와 스키점프처럼 넓고 무거운 스키가 있다. 프리스타일 스키에는 대표적으로 쇼트스키가 있다. 쇼트스키는 길이가 일반 스키 플레이트보다 짧고 스키 폴대 없이 자유로운 라이딩과 트릭이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고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스키장에 가면 간간히 보이는 스노보드들, 아직 스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겨울 스포츠이다. 스키와 서핑을 접목한 형태인 스노보드는 긴 널빤지 하나에 양 발을 끼우고 옆으로 선 자세로 타는 스포츠이다. 두 개의 판(플레이트)과 지팡이(폴)가 필요한 스키와 달리, 스노보드는 한 개의 보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스키와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다. 스노보드의 종류로는 크게 폭이 넓고 탄력성이 있는 프리스타일 스노보드와 빠른 속도를 내도록 만들어진 알파인 스노보드가 있다. 프리스타일 스노보드는 노즈(앞)와 테일(뒤)이 동일하여 스노보더들이 양 방향으로 도약하고 착지할 수 있다. 스노보드를 이용하여 현란한 묘기를 선보이는 것이 바로 프리스타일 보드이다. 알파인 스노보드는 폭이 좁고 길며 단단한 스노보드로 프리스타일 보드와는 달리 테일 부분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알파인 스노보드는 알파인스키처럼 평행대회 전을 겨루는 대회에서 사용하는 스노보드이다. 또한, 프리스타일 보드와는 달리 딱딱한 하드부츠를 착용하며 스키와 같은 딱딱한 데크 바인딩으로 고정시키는 보드이다.

스키의 가장 기본적인 장비는 발에 대고 내려오는 길다란 판자 모양의 '플레이트', 손으로 잡는 막대기인 '폴', 플레이트에 발을 연결하는 '바인딩'과 '스키 부츠'가 있다. 각각 체형과 실력마다 고르는 기준이 다르고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장비를 선택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잘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스키복과 스키 장갑, 빛을 반사하는 하얀 눈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는 고글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스노보드를 즐기기 위한 장비도 스키와 비슷하다. 두 개의 플레이트 대신 하나의 '보드'가 필요하고 보드에 발을 고정시키는 '바인딩'과 '부츠'도 기본 장비이다. 스키와 마찬가지로 스키복과 장갑, 고글도 빼놓으면 안 된다.

관세율표상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는 HS 9506호의 운동 용구에 분류되고 있다. 즉, 스키 플레이트는 HS 9506.11호에, 스키바인딩은 HS 9506.12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스키폴과 스노보드는 HS 9506.90호에 분류된다. 그 밖의 스키용품은 각각 분류되고 있다. 먼저, 스키부츠와 스노보드 부츠는 신발류로서 HS 64류에 분류되는데, 갑피의 재질에 따라 각각 HS 6402.12(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호, 6403.12(가죽제 갑피)호, 6404.11(방직용 섬유제 갑피)호에 분류된다. 스키복은 의류로서 편물제의 경우 HS 6112.20호에, 비편물제 직물의 경우 HS 6211.20호에 분류된

다. 스키장갑도 가죽제의 경우에는 HS 4203.21호에, 편물제 장갑은 HS 6116.10호에, 비편물제 직물 장갑은 HS 6216.00호에 각각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고글은 안경으로서 HS 9004.90호에 분류되고 있다.

스케이팅 부츠, 신발 아닌 운동용구로 분류

스키나 스노보드처럼 눈 위가 아닌 빙판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스포츠도 있는데, 바로 아이스 스케이팅이다. 얇은 강철 날이 장착된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 위를 누비는 아이스 스케이팅은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겨울 레포츠이다. 스키나 스노보드에 비해 장비가 작고, 장소 제약이 없어 모든 연령층에 인기가 있다. 겨울스포츠이기는 하지만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많이 생기면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스케이팅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보이는 빙상 강국이기도 하다. 장비도 스케이팅 부츠와 안전 장갑, 헬멧, 보호대만 있으면 탈 수 있으며 스키나 스노보드와 마찬가지로 대여 가능하다. 아이스 스케이팅 부츠의 경우, 앞서 살펴본 스키부츠나 스노보드부츠와 달리 관세율표상 신발이 아닌 운동용구로 보아 HS 9506.70호에 분류되고 있다. 부상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보호대는 운동용 보호용구로서 HS 9506.99호에 분류된다. 안전헬멧은 스포츠 활동용 안전 모자에 해당하므로 HS 6506.10호에 분류된다. 장갑은 스키장갑의 분류와 동일하다.

눈썰매, 기타 운동용구로 HS 9506.99호에 분류

눈썰매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기에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겨울 스포츠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스키장보다 규모가 작은 덕분에 눈썰매장은 전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눈썰매장이 따로 있는 스키장도 있다. 눈썰매 말고 얼음판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도 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즐기기 쉽지는 않지만, 옛날 추억 속 꽁꽁 얼어붙은 강이나 연못에서 네모 널빤지 아래에 철사를 달아 썰매를 만들어 타면서 속도를 겨루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며 얼음썰매를 즐기며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동방식의 썰매는 관세율표상 기타의 운동용구로서 HS 9506.99호에 분류된다.❶

글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중국 비관세장벽 뛰어넘기

GB표준으로 인한 피해 및 해결방법 등 문의 횟수 증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중국 비관세 장벽이 국내외 불안한 요소와 연결되어 중국 진출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최근 2015년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개정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RoHS)과 리튬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 새롭게 생겨나는 많은 기술 장벽으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커질 전망이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 중 최근 무역기술장벽(TBT)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2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대 한상의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TBT 조치 건수는 2000년대 초 4년간 2511건에서 최근 4년간 6373건으로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식품 분야 TBT 유형이 급증했는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 분야에서 중국의 대 한국보호무역조치는 약 990 건에 이르며, 특히 2000년부터 2014년까지 SPS(위생검역)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의對 한국 식품분야 보호무역 조치 건수

	기타	TBT	SPS
2000~2008년	25건	138건	536건
2009~2016년	6건	91건	193건

자료 WHO I-TIP 자료로 재가공

* 식품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기준임 (HS 01~24).

** 기타는 관세할당, 수량제한 등 조치들을 포함함.

1 중국국가표준인 GB는
國家標準_국가표준(Guo Jia Biao Zhun)에서 따른
약자로 중국의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제정하여
관계자가 사용하도록
하며 우리나라의 KS
표준과 유사하다.

그중 GB표준¹으로 인한 피해사실 및 해결방법 등을 유관 기관에 문의하는 사항이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이 흔히 범하는 인식의 오류는 중국 제품 표준을 이해하지 못해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서 한국 KS표준이 중국보다 더 자세하고 우수할 것이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산업 KS표준과 중국의 GB표준 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이 발생한다.

- ① 중국과 한국의 지리적, 환경적 차이
- ② 준용한 국제표준의 연도판의 차이
(예) KS는 2008년도의 국제표준을 준용했으나
GB는 2001년도의 국제표준을 준용한 경우)

TBT 법 체계 구성

중국의 TBT 관련 법 체계는 1989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다. 1990년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실시조례> 제12조~제17조에 의거하여 국가표준(국가표준위원회), 산업표준(공업정보화부 등 부처), 지방표준(지방성), 기업표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국가표준이 최상위 표준으로 업종표준과 지방표준은 상위 표준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총 3만 2천여 종의 국가표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표준은 시행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표준(기술규정)과 권고표준으로 분류한다.

분류	종수	비고
국가표준	32,493종(100%)	국가표준위(SAC)
- 강제표준(GB)	4,248종(13%)	
- 권고표준(GB/T, GB/Z)	28,245종(87%)	
산업표준(강제/권고)	4만 여종	건설부 등 정부부처
지방표준(강제/권고)	25,316종	

GB표준 구성

GB표준은 국제표준을 준용해서 제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표준을 준용한 경우에는 해당 GB표준이 참고한 국제표준이 표지에 표기되어 있으며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해당 GB표준을 활용하는 제품의 ICS코드
(ICS 25.140.20) 중국에서 GB를 산업별로 분류한 분류코드와 숫자(K 64)
- ② GB 표준번호와 이 GB표준이 준용한 국제표준번호
- ③ GB표준의 이전 판본
- ④ GB표준 종문명
- ⑤ GB표준 영문명
- ⑥ GB표준이 준용한 국제표준의 표준번호 및 부합화 정도
- ⑦ 규격 공표일(원쪽)과 규격 실시일(오른쪽)

자료 한중지원서비스포털 <http://www.knowbt.kr>

GB표준 검색활용 및 해결방안

중국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인 중국정부법제신식망, 중국 표준화위원회 등을 활용해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법규 및 국가표준 최신본을 파악한다.

① 법규 정보 확인

① 본 화면 메뉴(法定快递) ② 기준 법률, 행정규정, 규정문서, 지역규정, 국무원 규정 지자체 규정 ③ 지방정부 최신 법률 ④ 법률명 검색

② GB 국가 표준 정보

① GB번호 ② GB 종문명 ③ GB 영문명

③ 지방 표준 정보

地方标准备案目录查询	
备案号	
地名+标准号	DB11
地方标准名称	
代替标准号	
批准日期 A(From) [] B(To) []	
实施日期 A(From) [] B(To) []	
标准主管部门	
提交(Submit) 恢复(Restore)	

지방 표준의 성, 직할시 및 자치구별 고유 번호

지방	코드	지방	코드	지방	코드
베이징	DB11	철강성	DB33	해남성	DB46
톈진	DB12	안후이성	DB34	충칭	DB50
하북성	DB13	복건성	DB35	사천성	DB51
산서성	DB14	장시성	DB36	귀주성	DB52
내몽고 자치구	DB15	산동성	DB37	운남성	DB53
요녕성	DB21	하남성	DB38	산시성	DB61
길림성	DB22	후베이	DB42	간쑤성	DB62
흑룡강성	DB23	후난성	DB43	청하이	DB63
상하이	DB31	산동성	DB44	닝샤후이족 자치구	DB64
강소성	DB32	광시좡어 자치구	DB45	신장위그루 자치구	DB65

지난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knowbt.kr)’을 개설하고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기업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산업별·품목별 표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물론이고 중국이 신규로 도입한 규제,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사례 등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비관세 장벽 발전방향 및 제언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인 국제표준 부합화 및 시행유예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관기관은 동 규제의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업계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 시 중국 표준 파악 및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❶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② 중국 해관(海关)에 의한 지재권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중국 해관 통해 즉각적인 중지 효과 얻을 수 있어

통상적인 무역에서 각국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의 하나로 취급하여 통과 중지 등의 무역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수출입을 담당하는 세관을 통하여 침해제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절차 중지 등의 보호 조치가 가능한데, 보통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해관에 해당 권리를 등록한 뒤 권리 침해 제품이 수출입 통관 절차 과정에서 세관에 의해 발견되면 그 통관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한국은 중국 국가별 교역액 순위에서 2015년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국가이지만,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무역 순위와 규모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일례로 중국 해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단속 규모가 약 매년 1,2억 건, 480억 원 정도인데, 침해 단속 규모를 기준으로 각 나라별 보호 순위에서 한국은 10개국 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2011년도 기준으로 중국 해관 등록 지재권 총 16,235건에서 한국 권리자는 109건(0,68%)만을 등록하는데 그쳤다. 결국 한국 기업은 중국에 제품을 수출입을 가장 많은 하면서도, 수출입 되는 제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중국 해관(海关) 지재권 보호 개요

중국 해관은 「중국인민공화국 해관법」, 「해관의 지식재산 보호 조례」, 「해관 지식재산 보호 실시 방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 지식재산권 중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중국 해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중국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 등) 보호 조치는 그 절차가 간편하고 조사·판정 기간이 비교적 짧고, 중국 해관의 판정에 따른 물수 및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중국 인민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이 침해 중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경우에, 중국 해관에 의한 수출입 통관 보류라는 매우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제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 해관에 의한

보호 조치는 크게 2가지로, 중국 해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해관의 직권적 보호 조치와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통한 신청에 의한 간접적 보호 조치가 있다.

2. 중국 해관에 등록된 지재권에 의한 권적 보호 조치

가. 지식재산권 해관 등록

중국 전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가진 한국 기업은 중국에 설치한 사무소가 없다면 중국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다. 해관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서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기타 관련 정보, 지식재산권 허가 행사 상황,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과 생산지, 수출입지역 해관, 수출입업체, 주요 특징과 가격 등, 이미 알고 있는 침해 화물의 제조업체와 수출입업체, 수출입지역 해관, 주요특징과 가격 등을 기재한다. 해당 신청서류는 30일 안에 등록허가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으로 통지된다. 지식재산권 해관 등록의 유효기간은 해관총서가 등기를 허가한 날로부터 10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유효기간을 매회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이후, 권리자는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련하여 변동이 될 때마다 즉시 중국 해관에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어 합법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가 의도치 않게 보류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나. 해관에 의한 침해제품 적발 및 권리자 통지

중국 해관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기준으로 직접 수출입 통



관 제품들이 중국 해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 적발한다. 그에 따라 중국 해관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 해당 사항들을 통지한다.

다. 권리자의 압류 청구 및 담보 제공

중국 해관으로부터 침해제품의 적발을 통지받은 권리자는 3일 이내에 압류신청을 하고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면, 침해제품은 압류되어 수출통관이 중지된다. 권리자가 3일 이내에 압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침해제품의 수출 통관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 정도는 화물가치가 2만 위안 미만일 경우 화물가치에 해당하는 상당이며, 2만~20만 위안일 경우 화물가치의 50%에 해당하는 상당이고, 화물가치가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위안 상당이다. 또한 압류가 진행되면, 권리자는 창고 및 보관,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마. 해관에 의한 침해 여부 조사 및 판정

권리자의 담보 제공에 따라 해관이 침해제품을 압류한 경우, 중국 해관은 압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침해제품에 대한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침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해야 한다. 해당 판정 결과 침해여부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권리자는 중국 인민법원에 별도의 침해행위 중지명령 또는 재산보전 조치를 행할 수 있다.

바. 처분 결정 – 몰수 및 벌금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은 해관 조사 및 판정에 따라 침해로 인정되면 몰수되며, 화물가치 30%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해관은 침해 화물을 몰수하면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해관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된다.

3. 권리자에 의한 신청에 의한 간접적 보호 조치

권리자 신청에 따른 보호 조치는 권리자가 직접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이 수입 또는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담보 등과 함께 중국 해관에 침해 화물에 대하여 압류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와 함께 압류를 신청하면, 권리자는 다시 중국 인민법원에 압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가치분 신청을 하여 해관에 협조집행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다.

권리자가 해관에 미리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못하여, 사후적인 신청에 의한 간접적 보호 조치는 침해를 확인을 하여 직접 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압류에 관한 심사가 엄격하고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압류 후에도 최종적인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크게 장점이 없어 거의 이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되도록 중국 해관에 미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통한 보호 절차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❷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관련 노하우②



하나의 협정국으로 단일 물품 수출하는 경우 품목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으나,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실전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업체별과 품목별 중 효율적인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종류는 크게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으로 나뉜다. 업체별 인증은 해당 인증을 취득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 및 모든 협정에 인증의 혜택이 부여되는 인증을 말하며, 품목별 인증은 해당 인증을 취득한 협정 및 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서만 인증의 혜택이 부여되는 인증을 말한다.

① 다수 협정국으로 여러 가지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업체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인증 신청이나 향후 간접 등 관리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다만,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각 협정별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며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구조적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차피 해당 협정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단순 수출국 기준이 아닌, 협정 활용이 가능한 수출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는 여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불가한 품목이 대부분이라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생산구조 자체를 변경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충족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품목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② 하나의 협정국으로 단일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품목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다만, 향후 여러 협정국으로의 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품목별 인증을 취득하고 향후 실제 수출이 가시화 되었을 때 업체별 인증으로 간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간혹 기업에서 자주 묻는 내용 중 하나가, HS 코드 6자리는 동일한데 사양 등에 따라 모델명 및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 가지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의 품목별 인증의 활용 방법이다. 품목별 인증의 신청은 HS 코드 6단위 기준으로, 신청 기업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표 품목 및 모델을 선정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진행한다. 대표 품목으로 품목별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 서류는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만 제출했으나 해당 물품의 HS 코드와 동일한 물품(모델 및 사양이 일부 상이하더라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증의 혜택이 부여 되므로 별도의 인증 신청 필요 없이 해당 인증을 통한 FTA 활용이 가능하다.

2. BOM 및 원산지소명서의 원재료·부분품 명세와 구매입증서류 상품명 일치

기본적으로 인증 신청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로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인증을 신청할 때 신청 품목의 원산지소명서와 소요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및 원재료·부분품의 구매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각각의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품명이 상이하여 심사 중 반려되거나 보완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원재료 등을 구매하는 경우 작성하는 거래명세표 상에는 공급하는 업체나 공급받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품번 등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품번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원재료 등이 어떠한 물품인지 심사자가 알 수 없으므로 원산지소명서나 BOM 상에 일반적인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품명 등을 적도록 권고하고 있어 상호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품번 등에 따른 품명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체 품번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각각의 거래명세표 상에 원산지소명서 및 BOM 상의 어떤 품목과 matching이 되는지를 표시하여 주는 것이 좋다.

3.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서, 수출자가 인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인증 취득 유무와 관계없이 수출자가 별도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 품목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로서 원재료 구매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는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노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이하 “인증수출자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즉, 수출자의 인증 신청에 따른 원산지 입증서류의 작성주체는 생산자로 대체가 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수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증을 신청하는 세관의 접수담당자 앞이나 해당 부서로 FAX 또는 E-mail을 통해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자료는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도 노출되지 않도록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 및 협정에 대한 품목별 인증을 제조자가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에 나와 있는 「FTA이행특례법」 제18조의 다음의 내용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국내 제조자가 既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물품을 구매하여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자의 인증서 사본 및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실제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구매입증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소명서 및 이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 제출 없이도 인증 취득이 가능하니, 인증 취득을 고려하는 상품 수출자의 경우 제조자의 인증 취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❶

FTA 원산지검증 점검 사항

5년 전부터 한·미 또는 한·EU FTA 활용한 업체, 원산지 검증 요청 증가할 것

올해에는 5년 전부터 한·미 또는 한·EU FTA를 활용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호에서는 원산지 검증 증가에 대비하여 업체 스스로 점검할 부분과 최근 검증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2017년은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이다.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 한·EU FTA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가 벌써 5년차 이상 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발효된 한·호주 FTA, 2015년 발효된 한·캐나다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가 발효 3년차 이상을 맞이하게 된다.

원산지 검증은 대체적으로 발효 후 2년 이상 지나야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FTA 발효 초기에는 당사국 간에 FTA 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FTA 활용 부분에 많은 힘을 쓸게 되고, FTA 업무가 정착되고 FTA 활용이 활발해지면 원산지 검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 관련 자료보관기간이 협정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EU FTA와 한·미 FTA의 경우 발효 초기에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5년 전부터 한·미 또는 한·EU FTA를 활용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호에서는 원산지 검증 증가에 대비하여 업체 스스로 점검할 부분과 최근 검증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원산지 관련 자료 보관의무 이행 검토

FTA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 등을 발행하게 되면 FTA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이행특례법')에 따라 FTA 원산지 증명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서 'FTA 원산지 증명에 관련된 모든 서류'란 말 그대로 회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FTA이행특례법

에는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지만 해당 서류만 보관한다고 하여 원산지 검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 별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출자 및 생산자

① 원산지 관련 모든 서류의 보관 유무 확인

법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예를 들면 원재료를 구매한 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원재료를 제조공장에 운반한 내역서, 원재료 입고내역서, 원재료 검수서, 작업지시서, 생산량보고서(일일, 주간, 월간 등), 검수보고서, 출고지시서, 포장명세서, 국내거래처 또는 수출을 위한 선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한 내역서, 물품대금수취증명서 등 원료를 구매하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까지의 모든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전의 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의 흐름이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② 역내산 원재료 공급업체의 원재료에 대한 서류관리 확인

원산지 검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인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등의 역내산 입증 서류를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검증을 하는 관세당국에서는 원산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 이상의 협력업체까지 함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p>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p> <p>나. 수입신고필증</p> <p>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p> <p>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p> <p>마. 수입물품의 과세기격 결정에 관한 자료</p> <p>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p> <p>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p> <p>나. 수출신고필증</p> <p>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로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p> <p>마. 해당 물품 및 원자재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p> <p>바. 원가계산서·원자재내역서 및 공정명세서</p> <p>사. 해당 물품 및 원자재의 출납·재고관리대장</p> <p>이.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p>	<p>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p> <p>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p> <p>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p> <p>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p>

우도 있다. 따라서 수출자나 생산자는 본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원산지확인서 등 역내산 원자재 입증서류를 발급한 업체까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한·미 FTA 또는 한-EU FTA 활용하는 업체는 미리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 수입자

수입자는 직접 FTA 관세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나 생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관할 서류의 종류도 많지 않다. 사실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상대국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가 이를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검증에 실패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도 수입자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원산지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원산지 검증에 실패하면 그동안의 관세혜택이 취소되어 관세와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 검증에 실패한 수출자로부터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몇 년간의 관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입 건 중에 관세혜택이 큰 것을 중심으로 수출자로 하여금 FTA 원산지 검증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로 인한 피해 구제에 대하여 논

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 업체가 현재 폐업했거나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원산지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출자로 하여금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것과 서류보관 의무 등이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2. 한·중 FTA 원산지검증

한·중 FTA는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2017년 발효 3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관발급의 특성과 중국 해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FTA 보다 검증 건수가 많은 편이다. 한·중 FTA는 한·아세안 FTA·한·인도 FTA 등과 마찬가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형식이지만 다른 FTA에 비해 발급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협정문에 원산지 증명서 서식과 서식의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검수하여야 원산지 검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 중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유형

관세청에서 발표한 ‘FTA 원산지검증 동향’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행장소 등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식이 다른 경우, 중국에서 사용하는 HS 코

드와 원산지증명서상의 HS 코드가 다른 경우 등 주로 형식적인 오류로 인하여 검증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검증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형식적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견본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여 중국 수입자와 세관 등 전문가에게 오류사항이 없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 수출 시 가장 많은 오류가 많고 수출정정이 많은 부분이 바로 중량이다. 회사에서 무게를 측정한 것과 실제 선적 시 무게가 다른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과 B/L 상의 중량을 동일하게 맞춘 다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가 너무 늦게 발행되면 수입국 통관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기관발급을 하는 FTA의 인증수출자를 획득하여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기관발급을 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를 획득하는 것이 여所所로 유리하다. 또한 중국 측 HS 코드와 우리나라의 HS 코드가 다른 경우 수입국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중국 측 HS 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HS 코드 분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수입자에게 사전분류를 신청하도록 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의사항은 비단 한·중 FTA 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여 실수하지 않아야 원산지검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유의사항



(1) 한·미 FTA

① 포괄증명기간

FTA 컨설팅을 하다보면 자율발급을 하는 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잘못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포괄증명기간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 한·미 FTA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업체는 무의식적으로 이 기간을 기재하여 발행을 한다. 포괄증명기간은 동일한 물품이 정기적으로 수출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편의를 위해 설정하

는 것이며, 원산지증명서에 포괄증명기간을 기재하면 물품의 수량은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물품의 수량이 기재되었다면 해당 수입 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어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수출 건에 맞추어 수량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에 기재 오류로 인하여 원산지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② FTA 특혜관세 대상의 명확한 구분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비적용 물품이 함께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증명서는 당연히 FTA 적용대상만을 기재하여 발행될 것이다. 그러나 인보이스에는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FTA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인보이스에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각각 별도의 인보이스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한·EU FTA

한·EU FTA의 원산지검증 실패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증수출자와 관련된 것이다. 인증수출자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증을 받은 품목이 아닌 경우 등 단순 오류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는데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 관리전담자 등의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세관에 인증수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새로 취득하여야 하니 신규인증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증번호로 계속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면 원산지 검증에 실패하게 된다.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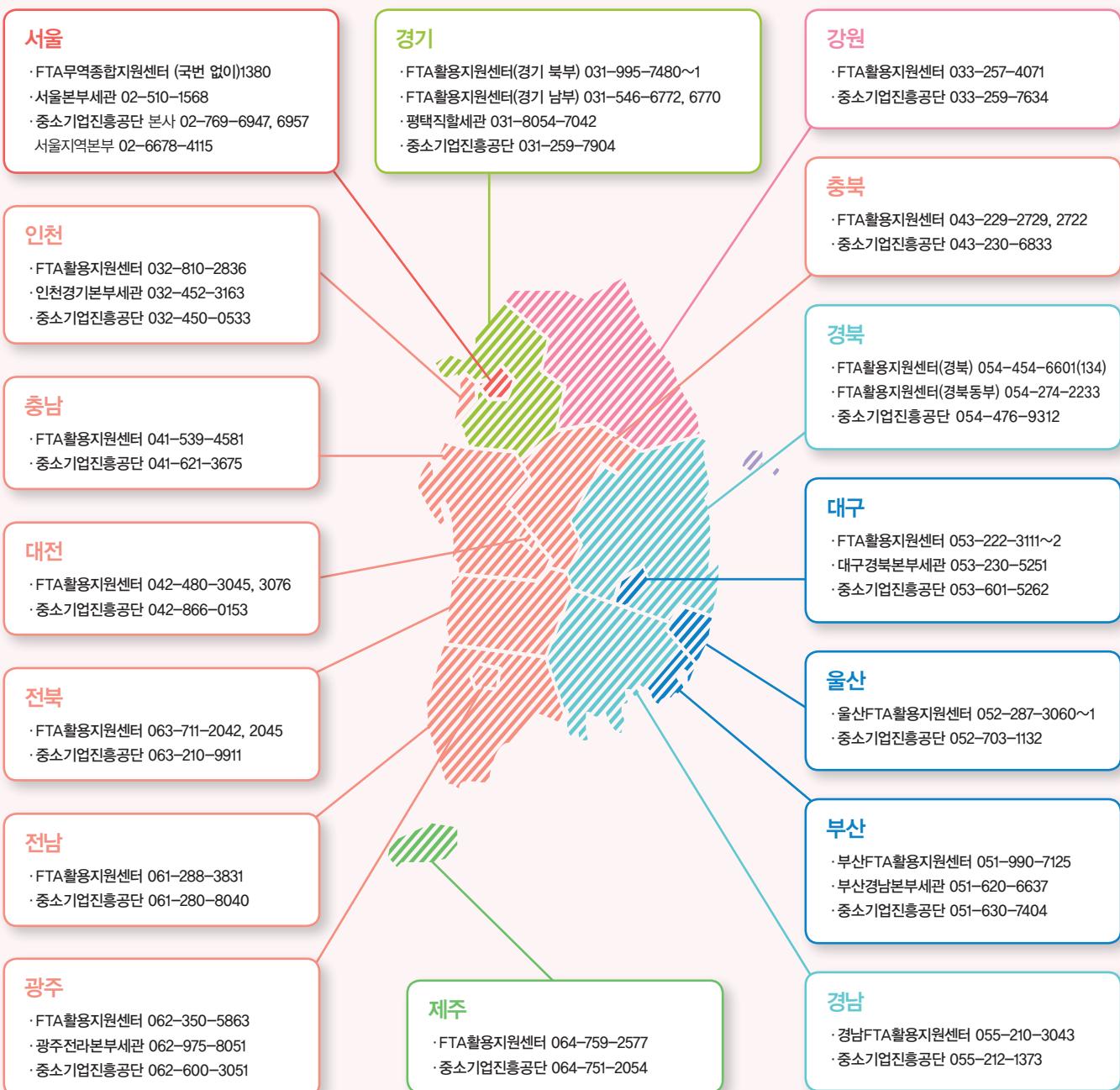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특유의 강직한 성격으로 유배 당한 김만중은 삭막한 유배지의 밤을 견딜 수 없어 그 자신을 위로하고 잠시 그 삭막함을 달래기 위해 '구운몽'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⑩구운몽

인간의 영원한 테마인 사랑, 그리고 욕망의 덧없음

유배지에서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쓴 김만중(1637~1692)의 삶과 작품세계를 보노라면 문득 다산 정약용을 그린 한승원의 소설 '다산'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어여쁜 아가씨와 사랑에 깊이 빠지듯이, 책 저술하는 사업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자, 금방 날이 저물고 밤이 짧았고 배고픔과 추위도 잊을 수 있었다. 게다가 사약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한승현은 다산의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시경'에 나오는 '동문 밖의 연못'에 비유한다. 이 시는 아름답고 고운 아가씨와 만나서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속삭이고 싶다는 연정을 노래한다. “동문 밖 연못은/왕골 담그기 알맞아라./저 아름답고 고운 아가씨와/만나서 함께 속삭일만해라” 다산에게 책을 쓰는 일이 그 어여쁜 아가씨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였고 결국 방대한 저술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구운몽'은 김만중이 평안도 선천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쓴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만중은 조선 사회에서 최

고의 예학 가문으로 명성이 높았던 사계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의 증손이다. 김장생과 김집 부자는 나란히 동국18현에 올랐다. 유학의 가풍이 뻣속 깊이 서려 있는 김만중은 어떻게 해서 자칫 도색소설로도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애정행각이 넘치는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잘 알려진 대로 강직한 성격인 김만중은 자신에게 조여 오는 위협 속에서도 그 강직함을 꺾지 않아 관직에서 추방당해 유배까지 간 신세였다. 그런 그가 낭만적인 애정소설을 썼다. 그 배경에는 한승원의 '다산'에서 다산의 글쓰기에 비유한 것처럼 삭막한 유배지의 밤을 견딜 수 없어 그 자신을 위로하고 잠시 그 삭

막함을 달래기 위해 '구운몽'을 썼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유학자인 김만중은 이를 살짝 은폐(?)하기 위해 서인지 아들을 유배지로 보내놓고 아들보다 더 삭막한 가슴으로 회한에 잠겨 있을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구운몽'을 썼다고 '서포연보'에 전한다.

"멀리 어머님께서 아들을 그리며 눈물 흘리실 것을 생각하니 하나는 죽어 이별이요, 하나는 생이별이라. 또 글을 지어 부쳐서 윤 씨 부인(어머니)의 소일거리를 삼게 하였는데 그 글의 요지는 일체의 부귀영화가 모든 몽환이라는 것이었으니……." 김만중은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한편으로 어머니를 위로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복잡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 일체의 부귀영화가 모두 헛된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지었는데 그게 '구운몽'이라는 것이다.

상층부의 삶을 살았던 양반들의 '남성적 욕망'

김만중은 이 소설에서 환시와 몽환을 주로 활용한다. 모든 현실적 욕망이 좌절된 김만중은 그 자신 또한 꿈과 미녀들을 소재로 환시와 몽환을 넘나들며 시름을 이겨내고자 했을 것이다. 김만중의 욕망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인공 성진은 윤회의 죄를 받고 환생해 양소유로 살아가게 되면서 화려한 '애정놀음'이 시작된다. 양소유는 만나는 여성과 이내 정을 통한다. 먼저 계성월이나 적경홍과의 관계는 그들이 기생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귀신으로 변장한 가춘운을 대하고 한시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귀신인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 관계가 액운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귀신을 잊지 못한다. 정경패는 이런 양소유를 보고 '여색에 굶주린 아귀' 같다고 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성의 투기에 대한 부분이다. 양소유는 처첩의 투기가 아니라 처첩들의 '협조'로 마음껏 욕망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왕의 동생인 월왕이 축첩을 단죄할 것을 왕에게 요청하지만 시시한 벌주로 그치고 만다.

따라서 '구운몽'은 가부장제의 한 복판에서 상층부의 삶을 살았던 양반들의 '남성적 욕망'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겠다. 김만중은 노모를 위해서 이 소설을 지었다고 했지만 정작 이 작품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로 넘쳐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평생 수절하며 자식을 키운 어머니 윤 씨 부인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이 소설에서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위로보다 당장 유배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위안에 더 방점을 둔 듯하다.

따지고 보면 일부다처제인 조선시대에서도 그 누구도 성진처럼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모두 여덟 명의 여성을 거느린 성진의 애정욕구는 어쩌면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남성과 여



김만중(1637~1692)
조선시대의 문신. 전문 한글인
'구운몽'으로 속종 때 소설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한글로 쓴
문학이라야 진정한 국문학이라는
국문학관을 피력하였다. 그 외
'사씨남정기', '서포만필' 등의
작품이 있다.

성들의 성적 로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 또한 현대 여성보다 오히려 더 당차게 사랑을 선택하고 애정을 전하고 진한 사랑을 나눈다. 진채봉은 양소유를 처음 보고 먼저 '러브레터'를 보내 과감하게 구애한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헛된 것이라는 불교적 인생관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세속의 명성을 한껏 누렸던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기에 부귀영화조차 한때의 헛된 꿈임을 역설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싶다.

김만중은 최고 예학 가문의 후예답게 '구운몽'에서 주인공의 애정행각을 묘사하면서도 '김만중의 예학'이 녹아 있는 교양(애정)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비록 산중에 있어도 도를 이루기 어렵고, 근본을 잊지 아니하면 속세에 있어도 돌아갈 길이 있는지라." 유교의 수신덕목과 결부돼 있는 이 문장은 김만중의 사상이 녹아 있는 명문이라고 하겠다. 성진은 여덟 선녀와 수작을 하다 그 마음이 발견돼 그만 윤회를 거쳐 양소유로 환생하게 된다. 양소유는 부귀영화와 무려 2천6첩을 둔 '화려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도를 얻으려 떠나려고 할 즈음 스승인 육관대사에 의해 꿈이 깨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현실에서 꿈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가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주제와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장춘몽' 혹은 '인생무상'은 결국 이 작품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구운몽'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처럼 인간의 영원한 테마인 애절하면서도 진한 사랑과 부귀영화가 담겨 있다. 그게 이 소설이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지금까지 고전으로 회자되는 이유가 아닐까. 새해에는 부귀영화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못 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만은 마음껏 해봄이 어떨지! ☺

정리 박주연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NEWS

한·베트남 '제1차 FTA 공동위' 및 '제7차 산업공동위' 개최 양국 내 기업 투자 촉진 위한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설치 합의



지난 12월 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제1차 FTA 공동위 및 제7차 산업공동위에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을 비롯한 한·베트남 양국 정부대표단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 뚜엉 아잉 장관은 지난 12월 7일 한·베트남 제1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및 제7차 산업공동위원회를 통해 3가지 핵심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로 양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투자 애로해소를 위한 베트남 내 “코리아 플러스”, 한국 내 “베트남 플러스” 설치에 합의했다. 한·베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한·베트남 양국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의 산업무역부에 각각 지원체계를 설치키로 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한·베트남 FTA 투자유보안의 조속한 타결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16년 11월 누계 515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

트남의 명실상부한 제1위 해외투자국(베트남 통계청 발표)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상호 간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한·베트남 FTA상 높은 수준의 투자유화가 필요함에 서로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FTA 투자유보안 협상을 조속히,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타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반덤핑·세이프 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현재 베측에서 진행 중인 우리나라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칼라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의 공정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베측은 한국의 우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 개최
이스라엘과 상생협력형 FTA 논의 시작**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예루살렘에서 열렸다.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2차 협상부터 1차협상 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 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 등 분야의 협상을 개시하며 상품 양허협상이 개시하는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및 무역 원활화, 원산지, 무역구제, 협력 등 주요분과 협상이 개시된 바 있다. 여한구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은 “첨단기술국인 이스라엘과 첨단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창업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및 인적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높은 기술력과 한국의 수준 높은 제조능력이 결합할 경우 두 나라가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12월 1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파노라마 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을 가졌다.

**② RCEP 제16차 공식협상 개최
상품·서비스·투자·시장접근 관련
추가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6차 공식협상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땅그랑(Tangerang)에서 열렸다.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 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시장접근 관련 추가 진전 도출을 위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했다. 상품 분야는 높은 수준을 추구하되 나라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 하에 참여국 모두에 적용하는 공통양허 목표를 집중 논의하고, 서비스 투자 분야는 자유화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아울러, 경쟁·지재권·위생검역(SPS)·원산지 등 13개 분야¹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 모두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되도록 협상 진전에 기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❶

¹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STRACAP(=TBT), 금융, 통신 (경제기술협력은 15차 협상시 챕터 타결)



Information



〈농어업인 FTA 성공사례〉 발간 – FTA 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농어업인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해 왔다. 하지만 이런 자유무역 확산의 이면에 농어업을 비롯한 국내 취약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그동안 정부는 기체결한 15개 FTA 중 한·칠레, 한·미국, 한·EU, 한·호주/캐나다,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등 8개 FTA에 대해 취약산업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약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농어민들이 FTA의 거센 파고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러한 FTA 대응 과정에서 우리 농어민들은 국내보완대책을 발판삼아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갖는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20개의 생생한 현장사례를 담아 ‘농어업인 FTA 성공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농어민들에게는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자 성공 영농으로 안내하는 네이게이션이 되는 한편, FTA 국내보완대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실무자들에게는 유익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농어업인 FTA 성공사례〉는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fta.go.kr>)에 들어가셔서 FTA 정보광장 FTA 쉽게 알기 흥보간행물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FTA〉가 2017년부터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이메일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grintissu@hankyung.com으로 보내주시면, 12월에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함께하는FTA〉를 보신 소감은?
- 〈함께하는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 이유를 적어주세요.
- 〈함께하는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grintissu@hankyung.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 시행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합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접대문화 NO, 각자 내기로!



국민권익위원회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